



본고는 민원인, 관련 단체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령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질의하여 회신한 주요 사례 중에서 닭고기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회신 당시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회신된 내용이므로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의 표시기준, 기타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현행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의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자를 표기했으니 본 질의·응답집의 질의회신내용을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 등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단급식소 납품 시 운반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저는 경남일원 일선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유통자영업자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재료의 발주서를 보면서 향후 문제제기의 소지가 있어 질의하고자 하오니 명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일반적으로 1차식품인 농산물을 세분할 때 채소류, 과일류, 곡물 등을 일컫는 순수농산물과 육지동물(우육, 돈육, 계육, 가금류 등)을 축산물로, 바다에서 어획되는 어류, 어패류 등을 수산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분류 품목에 따라 보관 및 운반시 관리온도를 차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우육과 돈육은 축산물 공급업자에게 발주하고, 가금류(계육, 오리고기 등)는 채소, 곡류 및 가공된 공산품을 납품하는 농공산물업자에게 발주하는 경우 채소류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가금류 축산물을 같이 운반해도 식품위생처리법상 문제가 없는지? 축산물운반은 냉장(동)시설과 온도유지 및 관리 등의 요건을 갖추고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득한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2011. 04. 04

### 회신내용)

■ 가금육을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 처리업 영업을 하는 영업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업자가 가금육을 집단급식소에 운송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예상할 수 있으며 첫 번째로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을 직접 운반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축산물운반업영업자에게 운송을 요청하여 운반하는 것입니다. 식육판매업이나 식육포장 처리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만을 취급하므로 농산물을 취급할 수 없을 것이며, 축산물운반업의 경우에도 축산물을 운반하는 영업이므로 다른 식품을 운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축산물이 아닌 다른 식품을 운반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식육과 농산물은 서로 보관하는 조건이 달라 동시에 보관, 운반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식육은 조리하여 먹는 식품임에 반해 채소류는 조리하거나 조리하지 아니하고 세척 후 바로 섭취하는 식품이므로 같이 보관, 운반하는 것은 교차오염 등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출처 : 축산물위생관리법 질의·응답집